

1. 제안이유

극지(劇地)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·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,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「극지활동 진흥법」이 제정(법률 제18055호, 2021. 4. 13. 공포, 2021. 10. 1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의 방법(안 제2조, 제3조)

- 1)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
- 2)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

나. 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4조)

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현황, 연구개발사업 현황, 연구 데이터 등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할 정보의 내용을 규정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극지활동 진흥법」(법률 제18055호, 2021. 4. 13. 공포, 2021. 10. 14. 시행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합의 완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극지활동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현지조사 방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
2.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실태조사반 구성·운영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연구개발, 극지활동 기반시설 운영, 국제협력,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되는 경우
2. 중복조사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반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(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, 보유·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극지 연구 인프라 구축 현황
2. 극지 연구개발사업 현황
3. 극지 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및 시료 정보
4. 항로, 지리 등 극지 관련 공간 정보
5. 남·북극 과학기지 및 쇄빙연구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
6. 극지활동과 관련된 성과 정보
7. 극지 관련 과학, 정책, 산업, 국제협력 정보
8. 국외 극지연구 데이터 제공 플랫폼에 대한 정보
9. 그 밖에 극지활동에 필요한 정보